

일시 : 2022. 3. 24.(목)

장소 : 카카오톡 비대면 회의

- 검단동 통장 정기회의 -
3월 중 홍보자료

즐거워
행복한
함께하는
서구



검 단 동

목 차

1.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‘효드림복지카드’ 지원	2
2.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안내	3
3. 여성·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	4
4. 가로주택 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	5
5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회의 일정 안내	5

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‘효드림복지카드’ 지원

- 지원대상 :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
 * 1947. 12. 31. 이전 출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
- 지원금액 : 연 8만원(1회)
- 지원방법 : 인천e음카드 충전
- 신청기간 : 2022. 3. 21.(월) ~ 10. 31.(월)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자격 : 어르신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동거인(동일주소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, 인천 소재 시설의 장(요양원 등),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, 요양보호사, 생활지원사
- 사 용 처 : 인천 소재 건강관리, 위생관리, 여가, 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

건강관리	위생관리	여가·체육활동	전통의례
음식점, 건강식품점, 의료기기 및 용품, 안경점	이미용, 미용재료상, 화장품점, 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, 온천	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, 시, 군구 운영 체육시설 등	전통시장 이용 (소상공인 관련 업종 포함)

※ 소상공인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

- 카드사용기간 : 지급(충전) 다음날부터 2022. 12. 31.까지
 * 2022. 12. 31.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됨(이월불가)

○ 지원금 회수

- 타 시·도 이사 또는 사망 시 지원금 잔액 회수
- 카드 매매·양도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당해연도 지원금 전액 회수

【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☎ 440-2816】

2022년 **적십자회비** 모금안내

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(인천지사)에서는 적십자회원 모집 및 적십자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구민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오니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구민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☐ 모금기간

연중모금 - 2021. 12. 1. ~ 2022. 11. 30.

*** 2차 집중모금 - 2022. 2. 21. ~ 2022. 4. 30.**

☐ 모금지역 : 서구 전지역

☐ 모금대상 :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미참여 세대주 및 비세대주

☐ 대상자 선정방법

세대주	▪ 1차고지 미납자 전체 고지 ▪ 수납액 0원 통 전체 고지 ※ 우편반송 세대주 제외
비세대주	▪ 개인사업자 : 미납자 전체 ▪ 영리법인 : 미납자 전체 ▪ 비영리법인 : 미납자 전체 ※ 우편반송 비세대주 제외

☐ 납부방법 : 금융기관 지로창구, 가상계좌, 편의점 직접 납부 등

【 모금문의 : 대한적십자가 인천지사 사회협력팀 ☎ 810-1317 】

여성·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

□ 사업개요



<안심지킴이집 현판>

○ 사업기간 : 연중

○ 사업내용 :

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여성·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으로 대피하여 도움을 요청, 비상벨을 통하여 경찰청 112 핫라인으로 신고, 경찰이 출동하여 함께 귀가함으로써 구민과 편의점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각종

폭력 예방 환경 조성

○ 이용방법 : 안심지킴이집 현판(편의점의 출입문이나 입구 주변 유리에 부착되어 있음) 설치된 편의점으로 대피 후 경찰에 신고 요청

○ 흐름도



【 부서명 : 가정보육과 ☎ 560 - 5737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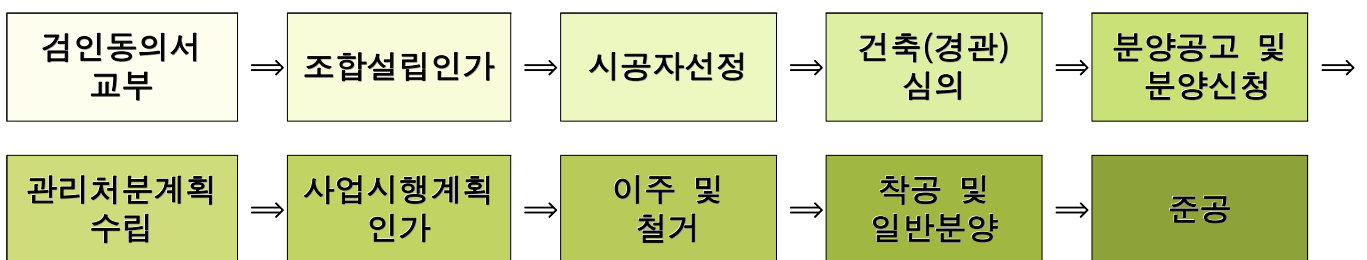
★동의서★ 작성 시 **신중하게 결정하세요!**

-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 -

☑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?

- ▶ 노후·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- ▶ 요건
 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6m이상 도로(4M 초과 통과도로 없을 것)로 둘러싸인 1만㎡ 미만 지역
 - 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2/3이상, 기존주택 20호(세대) 이상
- ※ 관련법 :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☑ 사업추진 절차



☑ 추진 시 유의사항

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

-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**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·과장 광고하는 사례**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, **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**
-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, 종전자산가치 평가, 건축 규모 등의 변경, 사업 기간,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변동되어 향후 **분담금 추가 발생 가능**

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

-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로 인천도시공사(☎.032-260-5315~6)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무료 제공(토지등소유자 50% 동의 시 신청 가능)

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

-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나,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**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**으로써,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**모든 피해는 주민(조합원)**이 받음
-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누리집(renewal.incheon.go.kr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- 정비사업 안내 -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)에서 확인 가능

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정비 사업

-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(조합)이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**스스로 결정**

[우 22725]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[심곡동]
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
[TEL 032-560-4590, FAX 032-560-2770]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회의 일정 안내

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단체 회의 일정 안내

- 2022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,
정례회의 등 주민단체 회의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
안내드립니다.
- 선거기간 중 단체회의 금지 기간
〈2022.05.19.(목) ~ 2022.06.01.(수)〉
- 관련규정
공직선거법 제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